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12일

풍양면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김 *현	김 *현 1979-11-17	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낙상1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2-12-12